

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3. 1

개정 2025. 2. 1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입학(이하 입학이라 한다)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조직 및 위원)

- ① 위원회는 스쿨별로 구성하며 스쿨원장을 포함하여 전공교수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스쿨원장이 되고 원장이 간사를 위촉한다.
- ③ 위원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기본계획 심의
2.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
3.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
4.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-전형유형, 전형자료, 자격기준, 전형일정, 모집인원의 배분 등
5. 대학입학 사정기준 제정
6. 기타 입학관리에 관련된 주요사항

제4조(임기)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모집학년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,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단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과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중인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심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